



#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약관 해석 및 개선

백영화 연구위원

휴일재해사망 또는 휴일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에서,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들이 있었음.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보험회사들의 개별 약관을 개선할 것을 안내하였음. 이에 의하면, 재해·상해 사고가 휴일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해·상해사고가 평일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휴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휴일재해사망 또는 휴일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에서, 재해·상해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또는 상해<sup>1)</sup>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에 레저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자가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재해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 보장 급부를 강화시킨 휴일재해·상해 특화 보험 상품이 등장한 것임<sup>2)</sup>
  - 약관상 “휴일”에 대해서는 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정하는 경우, ②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근로자의 날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지를 기준으로 휴일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sup>3)</sup>

1)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를 정함),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담보함  
 2) 부산일보(1995. 8. 21), “휴일재해보험 잇단 시판 - 생보사, 레저인구 급증 착안 사고보장 강화”  
 3) 보험 상품에 따라 약관상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1〉 휴일재해사망 또는 휴일상해사망 보장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예시)

- 
- “휴일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휴일에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 위 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재해·상해 발생일과 ②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 재해·상해 사고와 사망 중에서 어떠한 것이 휴일에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할 수 있는 것임
  - 즉, 휴일에 발생한 재해·상해로 인하여 평일에 사망한 경우, 또는 반대로 평일에 발생한 재해·상해로 인하여 휴일에 사망한 경우에 각각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휴일재해사망보험에 관한 과거 분쟁 사례에서 감독당국은 사망일이 아니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사망 또는 평일재해사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라는 약관 조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sup>4)</sup>
  - 피보험자가 평일에 신체에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토요일에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보험회사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자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사안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휴일재해사망을 담보하는 개별 약관에서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가 평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휴일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내용이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망일이 아닌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사망 또는 평일재해사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sup>5)</sup>
  - 피보험자가 중국에서 금요일 밤(중국 현지시간)에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된 후 토요일에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이에 재해 발생일은 평일이었지만 사망일이 휴일이었으므로 평일재해사망보험금(2천 5백만 원)이 아닌 휴일재해사망보험금(5천만 원) 지급 대상이 아닌지가 문제된 사안임
  -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해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 발생일이 휴일인지 아니면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르게 하고자 한 취지라고 보았음<sup>6)</sup>

4) [http://www.fcsc.kr/C/fu\\_c\\_03\\_02.jsp?faq\\_seq=9117&lineNo=774](http://www.fcsc.kr/C/fu_c_03_02.jsp?faq_seq=9117&lineNo=774)

5) 2008. 8. 26. 조정번호 제2008-60호

6)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는 재해 발생일이 중국 현지시간 기준으로는 평일(금요일 밤 23시 30분경)이었지만 계약 체결지인

■ 법원 판례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경우,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경우,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경우 등이 있음

- 피보험자가 휴일(일요일)에 재해 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평일(목요일)에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보험금(1억 1천만 원) 지급 대상인지 평일재해사망보험금(5천 5백만 원) 지급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망일자가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를 판단해야 하므로 평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 1심 판결이 있음<sup>7)</sup>
  - 해당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휴일재해사망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피보험자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었음
  - 법원은, 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일자가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음
- 한편 위 사안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 발생일이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sup>8)</sup>
  -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서, 그 중 주된 요소는 재해에 따른 결과인 “사망”이라기보다는, 우연성을 중심적 개념 요소로 하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더 근접한,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로서의 “재해”라고 본 것임
-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휴일(일요일)에 재해 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평일(화요일)에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였음<sup>9)</sup>
  - 해당 보험 약관에서는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음
  -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은, “휴일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

한국 기준으로는 휴일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휴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 발생지(외국)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계약 체결지(한국)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음. 해당 상품의 약관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휴일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음.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일재해사망보험에서 휴일 사고 또는 평일 사고인지에 따라 보장 수준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이유는 통상 사고 발생률이 평일보다 휴일에 높게 나타나므로 휴일 재해에 대한 계약자의 보장 니즈가 더 크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지’를 기준으로 휴일 사고 또는 평일 사고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험 설계 취지 및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그에 따라 해당 건의 경우 사고 발생지인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재해가 평일에 발생한 것이므로 평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 한편 요즘 휴일재해사망 또는 휴일상해사망 보험 약관에서는 사고 발생지를 기준으로 휴일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7) 서울지방법원 2001. 5. 8. 선고 2000가단186462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31129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5236530 판결

로 사망하였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그 문구의 위치에 비추어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았음

-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은 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것임

■ 휴일재해사망 또는 휴일상해사망 보험은 휴일에 발생하는 재해·상해 사고를 특화하여 보장하려는 상품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도,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의 개별 약관에 반영할 것을 안내한 바 있음
-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약관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sup>10)</sup>

〈표 2〉 휴일재해·상해사망 보장 개별약관 개정안(예시)

| 현행                                                                                                                                                                                                                                                          | 개정안                                                                                                                                                 |
|-------------------------------------------------------------------------------------------------------------------------------------------------------------------------------------------------------------------------------------------------------------|-----------------------------------------------------------------------------------------------------------------------------------------------------|
| <p><b>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b>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p> <p>1.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p> <p><b>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b><br/>〈 신 설 〉</p> | <p><b>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b> ① (현행과 같음)</p> <p><b>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b> 제1조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p> |

- 아울러,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 상품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다른 표현은 없는지 검토하여 함께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예를 들어,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상품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러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보험기간 만료 후에 사망하였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임 **kiri**

10) 금융감독원(2020. 7. 7),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